

#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(태양광) 설치 지원사업 참여기업 사업자 공모 공고

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 - 18호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이 추진 중인 「2016년도 신·재생에너지보급 - 건물지원사업」 중 제주에너지공사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의 상호협력 업무협약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내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설비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『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(태양광) 설치 지원사업』에 참여시공업체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.

## 1. 사업개요

- 사업명 :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(태양광) 설치 지원사업
  - ※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보급 건물지원 사업과 연계
- 사업대상 : 제주특별자치도내 사회복지시설
  - 건물 1채당 최대 10kW 1,000만원을 지원
  - ※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보급 건물지원 사업 10kW 1,090만원 지원
- 예상규모 : 200kW 내외(10kW 기준 20개소)

## 2. 사업신청자격 및 방법

-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 - 18호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이 추진 중인 「2016년도 신·재생에너지보급 - 건물지원사업」의 참여시공업체 중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(본점)의 소재지가 제주도에 있는 업체

## 3. 사업 접수 및 대상자 발표

- 접수기간 : 2016. 02. 12(금) ~ 02. 16(화) 18:00  
(매일 10:00~18:00까지, 토요일,공휴일 제외)
- 접수처 :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(제주시 청풍남 8길 12-1)
- 발표 : 2016. 02. 17(수) 17:00 (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)

#### 4. 지원 절차 등

- 사업대상자 발표 후 모든 절차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보급 (건물지원)사업 절차에 따르며 한국에너지공단의 설비설치 완료 확인 후 참여기업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에 준공서류를 작성하여 공사비 신청(한국에너지공단 지원금 제외)
  - ※ 2016년 이내 설비설치 완료하고 모든 제반서류를 2016년 12월 2일까지 제출
- 사회복지협의회는 제주에너지공사에게 준공서류를 작성하여 지원금을 신청하고 제주에너지공사는 서류를 확인하여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금 지급 → 사회복지협의회는 참여기업에게 공사비 지급
- 허위로 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취소 및 사업참여 제한 등 조치
  - 관련서류 허위도장 날인, 제출서류 위·변조, 이면계약서 작성, 사업신청 및 사업승인 이전 설비설치, 설비설치 관련 규정·법규 미 준수 등
- 신재생에너지센터 지침에 따른 “신·재생에너지설비의 원별 시공기준” 및 건설산업기본법, 전기공사업법, 지자체 조례 등 관련 법을 준수하여야 하며, 미 준수 시 보조금 지급 보류 또는 사업 취소, 보조금 환수, 관련 법적 조치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음

#### 5. 기타사항

- 상세 문의
  -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(<http://www.jejubokji.net>)
  - 문의처 :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풍남8길 12-1(화북1동 1112-1)  
TEL : 064-702-3784 | FAX : 064-702-3383(담당: 고성민 복지사업팀장)

- 별첨 1. 사업제안공개모집 참여신청서  
2. 서약서  
3.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 
4. 제안서  
5. 사업참여 예정 사회복지시설 20개소 관련자료

2016년 2월 12일

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장

